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 신규 조문 대비표

현행(관세청훈령 제1981호)	개정(안)	사유
제9조(심사분야) ① (생략) 1. ~ 6. (생략) 7.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 및 증명서류에 관한 사항	제9조(심사분야) ①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7. ----- -----(「자유무역 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원산지에 관한 조사는 제외한다)	<input type="checkbox"/> 심사범위의 명확화 ○ FTA관세특례법 제17조제1항 부분은 심사범위에서 제외 ※ 관세조사 시 FTA 원산지조사에 대한 운영지침 통보(법인심사과-361, 2012.2.29.) 반영
제12조(심사기간 및 기간의 계산)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39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방문심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심사기간 및 기간의 계산)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input type="checkbox"/> 납세자보호관제도 관련 관세법 신설조항 반영

현행(관세청훈령 제1981호)	개정(안)	사유
2회 이상 연장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각각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 4. (생략) <신설> <신설>	----- ----- ----- 1. ~ 4. (현행과 같음) 5. <u>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이하 “납세자보호관등”이라 한다)이 세금탈루 혐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 6. <u>심사대상자가 세금탈루 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하여 심사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로서 납세자보호관등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u> ③ ----- 전체 심사기간 또는 방문심사 기간----- ----- ----- ----- 하며, 심사팀장은 심사기	○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납세자 권리 보호 절차를 진행하려는 경우 방문심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관세법 시행령 신설조항 내용을 반영(※시행령 제139조의2 제2항제5호, 제6호) ○ 심사기간 연장에 대해 납세자가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관세법 신설조항 내용을 반영(※법 제110조제2항, 법 제118조의4제2항)

현행(관세청훈령 제1981호)	개정(안)	사유
<p>에게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조사시에는 별지 제4호의1 서식의 기업심사 통지서와 별표 1, 별표 2의1호, 별표 제3호 및 별지 제6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전 통지한다. 다만, 증거인멸 등으로 심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방문심사를 시작하는 날에 기업심사 통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 서식의 첨부를 생략한다.</p> <p>1. (생략) <신설></p> <p>2. ~ 6. (생략)</p> <p>② ~ ⑤ (생략)</p>	<p>----- 해야 ----- ----- 제4호의2 ----- ----- 별표 ----- 1, 별표 1의2, 별표 2의2, 별표 3 및 별지 제6호서식의 ----- ----- ----- ----- ----- ----- ----- ----- ----- ----- ----- ----- ----- ----- ----- ----- ----- ----- -----</p> <p>1. (현행과 동일) 2. 별표 1의2의 심사자료 제출 관련 안내말씀 3. ~ 7. (현행 제2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p>	<p>※ 기업심사 자료제출 비협조 업체에 대한 운영 지침 개정 통보(법인심사과-425, 2020.3.2.) 반영</p> <p>○ 기업심사 사전통지 시 자료제출에 협조토록 안내하는 내용의 신규 서식을 함께 통지하도록 규정</p> <p>○ 호 번호 변경</p>

현행(관세청훈령 제1981호)	개정(안)	사유
<p>제31조(납세자권리현장의 교부 등)</p> <p>① 심사요원은 기업심사(제조사를 포함한다)를 시작하는 경우 심사 대상자에게 기업심사 통지서와 함께 납세자권리현장을 내주고, 심사 대상자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의 납세자권리현장 등 수령 및 확인서를 제출받아 심사서류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p> <p><신설></p>	<p>제31조(----- 권리보호)</p> <p>① ----- ----- ----- -----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하고, 심사사유, 심사기간, 별표 6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청사항 및 권리구제 절차에 대해 안내해야 하며, ----- ----- -----해야 -----.</p> <p>② 심사부서장은 납세자보호관등이 영 제144조의2제2항에 따라 납세자 권리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기업심사에 대해 시정요구를 한 경우에는 즉시 수용</p>	<p>□ 납세자보호관 제도 시행에 따라 현행 관련조항 명칭을 광의적으로 변경하고 조문내용을 개정·신설</p> <p>○ 관세법 신설조항을 반영하여 권리구제 절차 등에 대한 안내의 의무화(※법 제110조제2항)</p> <p>○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 제68조」을 반영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시정요구에 따른 필요절차를 신설</p>

현행(관세청훈령 제1981호)	개정(안)	사유
<p>② ~ ④ (생략)</p> <p><신설></p>	<p>여부를 결정하여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 별지 제11호서식의 고충민원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 통보서에 따라 납세자보호관등에게 통보해야 한다.</p> <p>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p> <p>⑥ 심사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 별지 제21호서식의 관세조사범위 확대 신청서에 그 사유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후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소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심사기간 종료 3일(첫날은 산입하되, 공휴일·토요일을 제외한다)전까지 신청해야 한다.</p>	<p>○ 항 번호 변경</p> <p>○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 제41조」를 반영하여 심사범위 확대 시 납세자보호(담당)관에 사전 신청·승인 받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p>

현행(관세청훈령 제1981호)	개정(안)	사유
<p><신설></p> <p><신설></p>	<p>1. 제11조에 따른 심사대상기간</p> <p>2. 제9조에 따른 심사분야</p> <p>3. 제9조제2항 각 호, 제3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심사대상품목</p> <p>⑦ 심사부서장은 심사범위 확대 신청이 승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기업심사범위 확대(유형전환) 통지서를 납세자에게 통지하면서 승인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p> <p>⑧ 심사부서장이 법 제114조의2 제4항 단서에 따라 장부 등의 보관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 별지 제26호서식의 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 신청서에 그 사유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후 관련</p>	<p>○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 제45조」를 반영하여 심사범위 확대 승인 시 납세자가 권리보호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신설</p> <p>○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 제47조」를 반영하여 장부 등 자료보관기간 연장 시 납세자보호(담당)관에 사전 신청·승인 받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p>

현행(관세청훈령 제1981호)	개정(안)	사유
<p><신 설></p> <p><신 설></p>	<p>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자의 장부 등의 반환 요청일로부터 3일(공휴일·토요일을 포함한다) 이내에 소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p> <p>⑨ 심사부서장은 제8항에 따라 장부 등의 보관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p> <p>⑩ 심사부서장은 장부 등의 보관기간 연장 신청이 승인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환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승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부 등의 반환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해야 하며, 반환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승인여부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승인되지 아니한 것</p>	<p>○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 제45조」를 반영하여 자료보관기간 연장승인과 관련된 절차 신설</p>

현행(관세청훈령 제1981호)	개정(안)	사유
<p>제36조(심사의 중지 및 재개) ①</p> <p>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심사(재조사를 포함한다)를 중지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심사대상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기업심사 중지 통지서를 보내 주어야 한다. 다만, 제조사시에는 별지 제11호의1서식을 사용한다.</p> <p>1. ~ 5. (생략)</p> <p><신 설></p> <p>제37조(심사대상기간의 준수) ①</p>	<p>으로 보아 장부 등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p> <p>제36조(심사의 중지 및 재개) ①</p> <p>-----제11호의2서식의 기업심사(재조사) 중지 통지서를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등이 심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하는 경우</p> <p>제37조(심사대상기간의 준수) ①</p>	<p>□ 납세자보호관 제도 시행에 따라 심사중지 사유 신설(※시행령 제139조의2제3항제4호)</p> <p>□ 심사대상기간 확장 사유 신설</p>

현행(관세청훈령 제1981호)	개정(안)	사유
<p>아 그 내용을 심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는 심사팀장의 명의로 심사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출을 요구하거나, 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p> <p>-----</p> <p>-----</p> <p>-----</p> <p>1. 별표 1의 기업심사 표준 준비자료 목록표</p> <p>2. 별지 제29호서식의 심사자료 제출 요구서</p> <p>3. 별지 제30호서식의 세관장 요구 심사자료 제출서</p> <p>4. 별지 제31호서식의 심사자료 제출 계획서</p> <p>5. 별지 제32호서식의 심사자료 미제출 사유서</p> <p>③ 심사팀장은 제53조에 따른 기업심사 결과 보고 시 제2항 각 호의 서류, 별지 제27호서식의 방문심사 자료 제출여부 확인서, 별</p>	<p>○ 자료요구 양식을 각호의 서식으로 표준화하고, 심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할 자료를 구체적으로 규정</p>

현행(관세청훈령 제1981호)	개정(안)	사유
<p>③ 세관장은 심사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p> <p>1. ~ 6. (생략)</p> <p>④ (생략)</p> <p>⑤ 세관장은 심사관련 자료가 제출되었는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방문심사가 끝난 후 심사 평가회의 개최 전까지 또는 제3항의 조치를 하기 전까지 심사대상자의 임원이나 대표이사로부터 별지 제27호서식의 방문심사 자료제출 여부를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p>	<p>지 제28호서식의 세관장 요구 심사자료 제출여부 확인서를 심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p> <p>④ -----</p> <p>- 사유없이 요청한 기한 내에 --</p> <p>-----</p> <p>-----</p> <p>1. ~ 6. (현행과 같음)</p> <p>⑤ (현행 제4항과 같음)</p> <p>⑥ ----- 방문심사 기간 동안 제출 요구한 심사관련 자료의 제출여부 확인을 위해 -----</p> <p>-- 제49조의 심사 -----</p> <p>----- 제4항의 -----</p> <p>-----</p> <p>-----</p> <p>-----</p> <p>-----</p>	<p>○ 자료미제출 요건 구체화</p> <p>○ 방문심사 시 제출요구한 자료에 대한 제출여부 확인을 의무화하고 확인서 징구시기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p>

현행(관세청훈령 제1981호)	개정(안)	사유
<신 설>	--. ⑦ 세관장은 방문심사 기간 외에 제출 요구한 심사관련 자료의 제출 여부 확인을 위해 제50조의 심사처분위원회 개최 전까지 또는 제4항의 조치를 하기 전까지 심사대상자의 임원이나 대표이사로부터 별지 제28호서식의 세관장 요구 심사자료 제출 여부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 방문심사 기간을 제외한 때에 제출요구한 자료에 대한 제출 여부 확인을 의무화
제39조(심사관련 자료의 일시보관) ① (생략)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 등을 납세자가 반환 요청한 경우, 납세자의 요청일로부터 14일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없다. 다만, <u>심사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u>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1회에 한하여	제39조(심사관련 자료의 일시보관)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심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u> 에는 제31조제8항 및 제10항의	<input type="checkbox"/>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 제47조」를 반영하여 심사자료 일시보관 절차 개정

현행(관세청훈령 제1981호)	개정(안)	사유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절차에 따라 소관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부터 승인 받아 한 차례만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43조의2(기업심사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등) ① ~ ② (생략) ③ 세관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논의하고자 하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u>별지 제29호서식</u> 을 제출하여 실무협의회 개최를 <u>요청하여야</u> 한다. ④ (생략)	제43조의2(기업심사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u>별지 제34호서식</u> ----- ----- <u>해야</u> -----. ④ (현행과 같음)	<input type="checkbox"/> 서식 번호 변경 ○ 앞단 자료제출서식 신설로 후단 서식번호 변경
제44조(심사방법의 변경) ① 심사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심사(재조사 포함한다) 대상을 방문심사	제44조(심사방법의 변경) ① ----- ----- -----	<input type="checkbox"/> 방문심사 변경 사유 신설 및 납세자보호관 제도 신설에 따른 심사방법 변경 절차 개정

현행(관세청훈령 제1981호)	개정(안)	사유
<p>대상으로 변경할 수 있다.</p> <p>1. ~ 2. (생략)</p> <p><신설></p> <p>② ~ ④ (생략)</p> <p><신설></p>	<p>-----.</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심사대상자가 방문심사로 변경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등 심사방법을 변경해야 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u></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⑤ <u>심사부서장은 제28조의 사전통지 이후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심사범위가 확대되는 경우에는 제31조제6항 및 제7항의 절차에 따라 소관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u></p>	<p>○ ‘납세자가 서면심사 진행 중 방문심사로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 심사방법 변경 근거가 없는 등 세관 제도개선 요청에 따라 방문심사 변경 사유 신설</p> <p>○ 심사방법의 변경은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심사범위의 확대’에 해당(제31조제6항)할 수 있으므로, 관련절차를 개정</p>
<p>제49조(심사 평가회의) 심사팀장은 방문심사 종료시 업체 임원, 수출입 부서장 등 업체 관계자가 참석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한다. 평가회의 개최시 기업심사 대상업체의 향후 성실신고 유도 등을 위해 다음</p>	<p>제49조(심사 평가회의) -----</p> <p>-----</p> <p>-----</p> <p>-----</p> <p>-----</p>	<p><input type="checkbox"/> 서식 번호 변경</p>

현행(관세청훈령 제1981호)	개정(안)	사유
<p>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업체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재조사에 경우에는 제2호, 제3호는 생략한다. 다만, 심사대상자가 참석을 원하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회의의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p> <p>1. ~ 6. (생략)</p> <p>7. <u>심사처분심의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8호서식 의견진술서를 제출하도록 안내</u></p> <p>8. (생략)</p>	<p>-----</p> <p>-----</p> <p>-----</p> <p>-----</p> <p>-----</p> <p>-----</p> <p>-----</p> <p>-----</p> <p>1. ~ 6. (현행과 같음)</p> <p>7. ----- <u>별지 제33호서식의</u> -----</p> <p>-----</p> <p>8. (생략)</p>	<p>○ 앞단 자료제출서식 신설로 후단 서식번호 변경</p>
<p>제51조(처분위원회 운영 절차)</p> <p>① (생략)</p> <p>② <u>심사팀장은 심사대상자가 처분위원회에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8호서식의 의견</u></p>	<p>제51조(처분위원회 운영 절차)</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 <u>별지 제33호서식의</u> -----</p>	<p><input type="checkbox"/> 서식 번호 변경</p> <p>○ 앞단 자료제출서식 신설로 후단 서식번호 변경</p>

현행(관세청훈령 제1981호)	개정(안)	사유
진술서를 제출받아 기업심사 결과와 함께 간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 <u>해야</u> -----	
제54조(심사결과의 통지) ① ~ ③ (생략) ④ 세관장은 기업심사의 결과를 통지할 때 납세자에게 <u>별지 제30호서식</u> 에 따라 심사시 검토한 내역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54조(심사결과의 통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u>별지 제35호서식</u> ----- ----- <u>해야</u> -----	<input type="checkbox"/> 서식 번호 변경 ○ 앞단 자료제출서식 신설로 후단 서식번호 변경
제63조(관할 세관장 통보) 세관장은 제58조부터 제62조까지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보세구역 관련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제재(주의·경고)에 해당하는 위반 사실을 적발한 경우, 그 사실을 관할 세관장과 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한다. <u><신 설></u>	제63조(처분 또는 위반사실 통보 등) ① ----- ----- ----- ----- ----- ----- ----- ----- ----- ----- ② 세관장은 기업심사 과정에서	<input type="checkbox"/> 처분 또는 위반사실에 대한 통보범위 확대 ○ 기업심사 과정에서 취득한, 동

현행(관세청훈령 제1981호)	개정(안)	사유
	<u>적발한 통관적법성 위반 내역이 심사대상 이외의 업체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관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위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를 생략하고 해당업체의 관할 세관장과 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u>	일 사안의 타 업체 통관적법성 위반 등의 정보를 관세조사 및 성실신고지원 목적 등 심사정보로 활용하기 위해 즉시 본청에 보고하도록 규정
제69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9조(재검토기한) ----- ----- ----- ----- <u>2021년 1월 1일</u> ----- ----- -----	<input type="checkbox"/>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변경